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	2023.10.27.(금) 조간	배포	2023.10.26.(목)
----	-------------------	----	----------------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효희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임잔디	(02-3145-6717)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	책임자	본부장	이창화	(02-2003-9016)
		담당자	부 장	김재욱	(02-2003-9200)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 -

주요 내용 요약

-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 부재	① 일반원칙 신설	의결권행사 정책·의사결정 체계 등 내부통제 모범기준 제시
주제별 편제	② 실무중심 편제 개편	단시간 내 참조가 용이하도록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전기재순서에 따라 편제 개편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불분명	③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명확화	이사 선임요건 등 법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원칙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고려요소 및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
최신 사례 부족	④ 사례 보완 및 현행화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 보강
의미·표현 모호	⑤ 의미·용어 정비	법령과 상이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 명확화
가이드라인 활용도 저조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 ◆ 동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추진 배경 및 그간의 진행경과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4월부터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개정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및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동 T/F 논의결과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3.8월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 정보 DB 구축 추진 방안을 우선 발표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기본 방향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점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 국내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많은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반면, 안건별 행사방향에 대한 모범안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사례가 부족하여 자산운용사의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① **(일반원칙 신설)**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② **(실무중심 편제 개편)** 현행 가이드라인은 안전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전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전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 <예>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정관변경 안전과 이사 선임 안전 등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배구조’ 편에 혼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기 불편

- 이에 안전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전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편제 개편 내용

현 행	개정안
A. 지배구조	1. 재무제표의 승인
	2. 정관의 변경
	3.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B. 자본구조	4.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C. 기업의 사회적 책임	7. 자본구조의 변경
	8.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③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하였으며,
 -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완 내용 예시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변경 시 반대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특별결의 요건(정관으로 달리 규정 가능) 부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시 찬성, 강화 시 반대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한계로서 상법상 요건 표기
성별 등 다양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에 찬성, 다양성 제한하는 제안에 반대	자본시장법 상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부기
사외이사 선임 시 일부 결격요건을 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시 법령상 결격요건에 대해 미규정	상법·지배구조법 등의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의 결격요건 부기
주주총회 안건의 일괄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	주주 이익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일괄상정 사례를 추가하고 상법상 분리상정 의무 사례 부기
이사 선임 시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성	고려요소로서 후보자의 경력 및 능력, 경영실적, 과거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등 고려요소 추가

④ (사례 보완 및 현행화) 최근 개정('16.6월)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 기업의 국제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21.12월)

-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 ESG 사례 예시

구분	개정사항
환경(E)	탄소중립기본법 상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 반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구체적 환경경영 목표의 수립·이행 등 환경경영 체계의 구축 또는 강화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사회적 책임(S)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성별, 경력, 능력 등)을 제한하는 안에 반대
	회사의 장기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지원 요구안에 찬성
	기업가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안체계 강화, 정보보호체계 운영 현황의 공시요구 등 주주제안에 찬성
지배 구조 (G)	주주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승인, 배당정책, 사업목적 변경, 주총결의사항 확대, 영업양수도, 감자·주식병합·분할, 상장폐지 결정 등 관련 조항에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판단기준 또는 사례 추가
	이사회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차임기제 등 이사의 임기변경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제안에 반대 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 또는 보수 승인 시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재임중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
	투명성·준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지원인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 제안에 찬성

- 또한,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 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였습니다.

* <예> 주주총회를 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것은 상법상 불가하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투표하도록 권고

** <예>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시차임기제 도입, 이사의 활동 공개 관련 판단기준 등을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중복 규정

- ⑤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 <예>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 → 의결정족수, 법정주식수 → 발행주식수 등

Ⅲ.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계획)** 동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23.8월 발표한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공시서식 표준화를 위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23.10.20.부터 시행되오니,

- 자산운용사는 개정 서식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소는 '24.4월부터 개정 서식 적용 예정('23.4.1.~'24.3.31. 기간중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24.4.30.까지 공시)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